

**투자위험등급:****1등급****[매우 높은 위험]**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등급)**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호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주식) 4호  
(20071)
2. 집합투자기구 분류 :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 프랭클린템플턴투자신탁운용(주) (02-3774-0600)
4. 판매회사 : <http://www.franklintonpon.co.kr> 및 <http://dart.fss.or.kr> 참조
5. 작성 기준일 : 2015년 3월 31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5년 4월 23일
7.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8. 모집(매출) 기간(판매 기간) :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3774-0600, <http://www.franklintonpon.co.kr>), 판매회사 및 협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자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가 될 수 있으니, 투자 판단시 해당 펀드가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저평가된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산증식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그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됩니다.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여 자본이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운용합니다. Bottom-up 방식에 의거하여 개별종목 중심으로 투자하며, 미래의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어 거래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합니다. 단, 시가총액, 코스닥, 섹터비중의 제한이 없으며, 내재가치 대비 저평가 여부에 따라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 때문에 벤치마크와의 추적오차가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 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비교지수: KOSPI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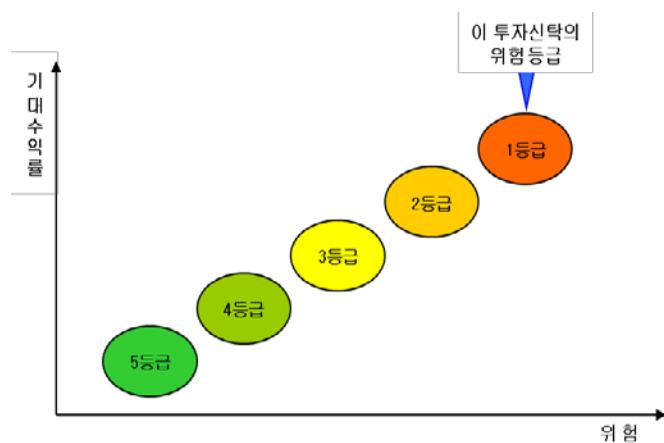
### 3. 주요 투자위험

| 구 분               | 투 자 위 혐 의 주 요 내 용   |
|-------------------|---|
| 원본 손실 위험          |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 시장위험 및 개별 위험      | ✓ <b>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b>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유동성에 따른 위험        | ✓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투자신탁 규모 변동에 따른 위험 | ✓ 당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
| 순자산가치             | ✓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

|       |  |  |
|-------|--|--|
| 변동위험  |  |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
| 해지 위험 |  |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자의 동의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은 당사가 정의한 5가지 투자위험등급들 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당사의 투자위험등급상 가장 높은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사의 투자신탁에 투자하려는 고객들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위험 성향을 보이는 고객들에게 적합하며, 우리나라 주식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변동성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주식 투자의 고수익/고위험을 추구하되, 국내주식 대비 해외주식 투자시의 투자위험 차이를 이해하고 해외주식 투자시의 그러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합니다. 이 투자신탁에 대한 권장투자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프랭클린템플턴투신운용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2015.04.15.현재)

| 성명  | 생년   | 직위                | 운용현황                |               |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 비고 |
|-----|------|-------------------|---------------------|---------------|---|----|
|     |      |                   | 운용중인<br>집합투자기구<br>수 | 운용자산<br>규모(원) |   |    |
| 오호준 | 1973 | 책임운용<br>전문인력      | 13개                 | 2,202억        |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1999-2004)<br>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2004-2007)<br>당사 주식운용팀 (2007-현재)                 | -  |
| 오성식 | 1963 | 부책임운<br>용전문인<br>력 | 13개                 | 2,202억        | 한국투신운용 (1989-1996)<br>삼성투신운용 (1996-1999)<br>리젠트자산운용 (1999-2001)<br>당사 주식운용CIO (2002-현재) | -  |

주 1)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http://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 투자실적 추이 (연도별 수익률, 세전기준)

| (단위:%)                     |        |                         |                         |                         |                         |                         |
|----------------------------|--------|-------------------------|-------------------------|-------------------------|-------------------------|-------------------------|
| 집합투자기구                     | 기간     | 최근<br>1년차               | 최근<br>2년차               | 최근<br>3년차               | 최근<br>4년차               | 최근<br>5년차               |
| 프랭클린 그로스 증권<br>투자신탁(주식) 4호 |        | (14.04.01~<br>15.03.31) | (13.04.01~<br>14.03.31) | (12.04.01~<br>13.03.31) | (11.04.01~<br>12.03.31) | (10.04.01~<br>11.03.31) |
|                            | 집합투자기구 | -14.53                  | 1.12                    | -9.49                   | -9.03                   | 28.23                   |
|                            | 비교지수   | 2.79                    | -0.96                   | -0.45                   | -4.4                    | 24.45                   |

주1) 비교지수 : KOSPI (100%)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II. 매입·환매관련 정보

### 1. 보수 및 수수료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 구 분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지급시기 |
|---------|-------------------|------|
| 선취판매수수료 | -                 | 매입시  |
| 환매수수료   | 90일 미만시, 이익금의 70% | 환매시  |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구 分                       |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
|---------------------------|-------------------------|
| 집합투자업자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7500%        |
| 판매회사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1.0000%        |
| 신탁업자 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500%        |
|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순자산총액의 연 0.0000%        |
| 기타비용(사유발생시) <sup>1)</sup> | 순자산총액의 연 0.0029%        |
| <b>총 보수·비용 비율</b>         | <b>순자산총액의 연 1.8029%</b> |
| 증권거래비용 <sup>2)</sup>      | 순자산총액의 연 0.2295%        |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의 자료를 기초로 한 비용으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

할 수 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 전체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2) 증권거래비용은 **201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 까지의 부분은 펀드가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분은 자산운용사가 부담)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 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sup>1)</sup>**

(단위: 원)

| 투자기간          | 1년차     | 3년차     | 5년차       | 10년차      |
|---------------|---------|---------|-----------|-----------|
|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 189,306 | 596,786 | 1,046,033 | 2,381,067 |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 과세**

가.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을 부담합니다.

나. 비과세대상 및 과세대상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은 일반기준가에 반영되며, 전체 소득 중 비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만 과표기준가에 반영되어 과세의 기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매일 가격이 변동되는 자산 중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비과세대상으로 분류되나, 국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차익, 외화자산의 환차손익,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과표기준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세제우대 시행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의 의사를 밝힌 경우 그 수익자가 동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해당 저축 가입일로부터 3년간의 3년간 이자, 배당 소득 및 농특세만 해당)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수익자의 해당연도 소득 연말정산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소득공제의 혜택(3년간 투자금액만 해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익자가 적립기간 중도에 적립계약을 해지(일부해지 포함)할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세제혜택이 추징됩니다.**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적립식 투자를 한 거주자(근로자, 자영업자 모두 가능)으로서 다음과 같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모든 거주자(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및 연금저축 계좌 제외)

가. 기존 적립식 펀드 가입자가 기존 적립 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다수 계좌 가능)
  4. 소득공제 비율
    - 가. 1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 나. 2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 다. 3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 5. 소득공제 사례

투자자 A가 2009.7.1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한 경우

가. 2009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09.7.1~12.31까지의 불입액의 20%

나. 2010년 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 : 2010.1.1~6.30까지의 불입액의 20%+2010.7.1~12.31까지의 불입액의 10% ↗ 을연부분을 소득공제 받음

| <u>가입일</u> | 2009.1.1 | 2009.7.1 | 2009.12.31 | 2010.6.30 | 2010.12.31 | 2011.6.30   | 2011.12.31 |
|------------|----------|----------|------------|-----------|------------|-------------|------------|
|            |          |          |            |           |            | 3년차분 5%소득공제 |            |

※상기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세제우대는 2009년 03월 20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이며 향후 동 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관련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세제우대에 대한 설명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그 내용의 일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판매 절차

### 가.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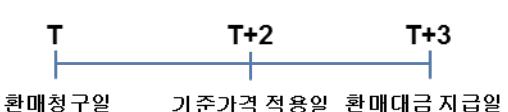
| 구분 | 내용 |
|----|----|
|----|----|

|                |  |
|----------------|--|
| 기준가격 산정방법      |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출   |
|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시. 다만, 최초설정일[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li> <li>- 판매회사 영업점 및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li> </ul> |

주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매입 및 환매 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구분 | 오후 3시 이전   | 오후 3시 경과 후  |
|----|--|---|
|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의 다음 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br>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br>                  |
| 환매 |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T+3)에 환매대금을 지급<br> | 환매청구일(T)로부터 제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T+3)에 환매대금을 지급<br> |

### III. 요약 재무정보

(단위: 원)

| 대차대조표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
|            | 2014-12-16     | 2014-06-16     | 2013-06-16     |
| 운용자산       | 14,369,100,331 | 19,313,813,735 | 26,331,315,508 |
| 증권         | 14,031,860,585 | 18,850,189,330 | 24,461,796,790 |
| 파생상품       | 0              |                |                |
| 부동산/실물자산   | 0              |                |                |
| 현금 및 예치금   | 37,239,746     | 63,624,405     | 69,518,718     |
| 기타 운용자산    | 300,000,000    | 400,000,000    | 1,800,000,000  |
| 기타자산       | 288,156,983    | 147,059,392    | 84,475,174     |
| 자산총계       | 14,657,257,314 | 19,460,873,127 | 26,415,790,682 |
| 운용부채       | 0              |                |                |
| 기타부채       | 391,876,942    | 320,140,574    | 315,511,780    |
| 부채총계       | 391,876,942    | 320,140,574    | 315,511,780    |
| 원본         | 19,008,080,051 | 22,613,696,224 | 32,034,017,085 |
| 수익조정금      | -2,843,595,753 |                |                |
| 이익잉여금      | -1,899,103,926 | -3,472,963,671 | -5,933,738,183 |
| 자본총계       | 14,265,380,372 | 19,140,732,553 | 26,100,278,902 |
| 손익계산서      | 제 15 기 반기      | 제 14 기         | 제 13 기         |
|            | 2014-06-17~    | 2013-06-17~    | 2012-06-17~    |
|            | 2014-12-16     | 2014-06-16     | 2013-06-16     |
| 운용수익       | -1,715,334,799 | 1,723,832,057  | -603,309,750   |
| 이자수익       | 4,797,208      | 15,749,718     | 41,097,433     |
| 배당수익       | 2,963,850      | 188,687,627    | 376,016,080    |
| 매매/평가차익(손) | -1,723,356,221 | 1,519,002,524  | -1,021,343,623 |
| 기타 수익      | 260,364        | 392,188        | 920,360        |
| 운용비용       | 183,769,127    | 465,562,197    | 923,178,939    |
| 관련회사 보수    | 152,450,018    | 413,786,962    | 752,906,066    |
| 매매수수료      | 321,930        | 831,910        | 2,713,060      |
| 기타 비용      | 30,997,179     | 50,943,325     | 167,559,813    |
| 당기순이익      | -1,899,103,926 | 1,258,269,860  | -1,526,488,689 |
| 매매회전율(%)   | 63             | 76             | 152            |